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01호 2022. 3. 14.(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380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394호(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395호(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35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1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16호(도로명주소 고시문) 64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동의요건에 대한 의견수렴 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시달
- (현황) 「인천광역시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제3조제 2호, 제3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문제점)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동의요건은 상점가 등록 요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 및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 ‘상점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상인의 동의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점가 상인회’로서 지자체에 등록 가능
- 또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며, 오히려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1.11.2.개최)

- (개선방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2.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신청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에서 앞쪽의 첨부서류 란도 삭제에 맞춰 수정
- 부칙에 이미 동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에 대한 경과조치 삽입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03.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경제지원과(☎ 749-7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전화 749-7791, FAX 749-7789
-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 3.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1년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총 23명으로 일반직 2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재난관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6종으로 5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체계로는 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계획의 총괄·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재난의 대응·복구 총괄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42,762백만원이고 100% 확보 되었습니다.
-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증가에 따른 확보 기준액이 증가하였으며, 누적 확보 기준액은 146,698백만원이며, 100% 확보되었습니다.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자연재난 대비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39,759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표 산출의 어려움(집합교육 실적 등)으로 인하여 2021년도에는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68개 시설 중 61개 시설이 내진설계 실시(내진성능 확보 포함) 또는 내진보강이 완료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내진율이 소폭 상승하여 89.7% 내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25종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교통사고 1등급, 화재 2등급, 범죄 1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1등급, 감염병 1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안전관리체계 확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지역안전지수 등 재난대비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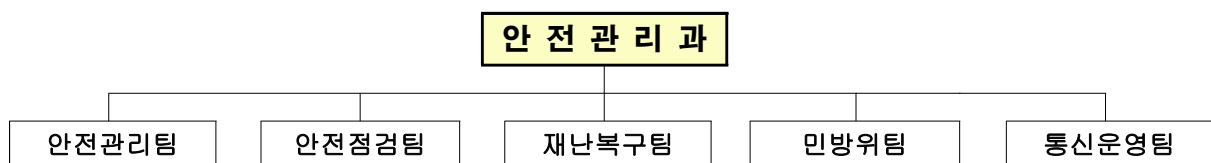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	당	없	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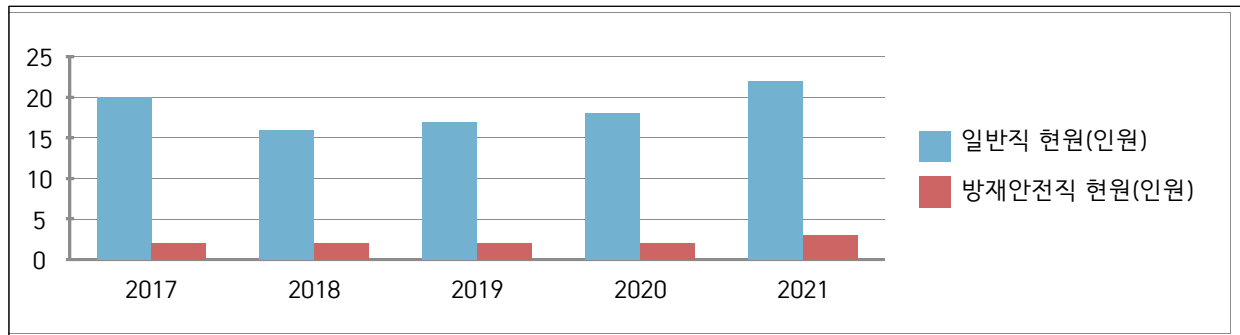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2	22	-	1	5	7	8	1	공무직1
	현원	23	23	-	1	5	5	8	3	공무직1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3	3	-	-	-	1	2	0
	현원	3	3	-	-	-	1	1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20	16	17	18	22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2	2	2	2	3



☞ 일반직 현원은 전년대비 4명이 증가하여 총 22명이며, 2021년에 방재안전직 신규를 추가 채용하여 현원 1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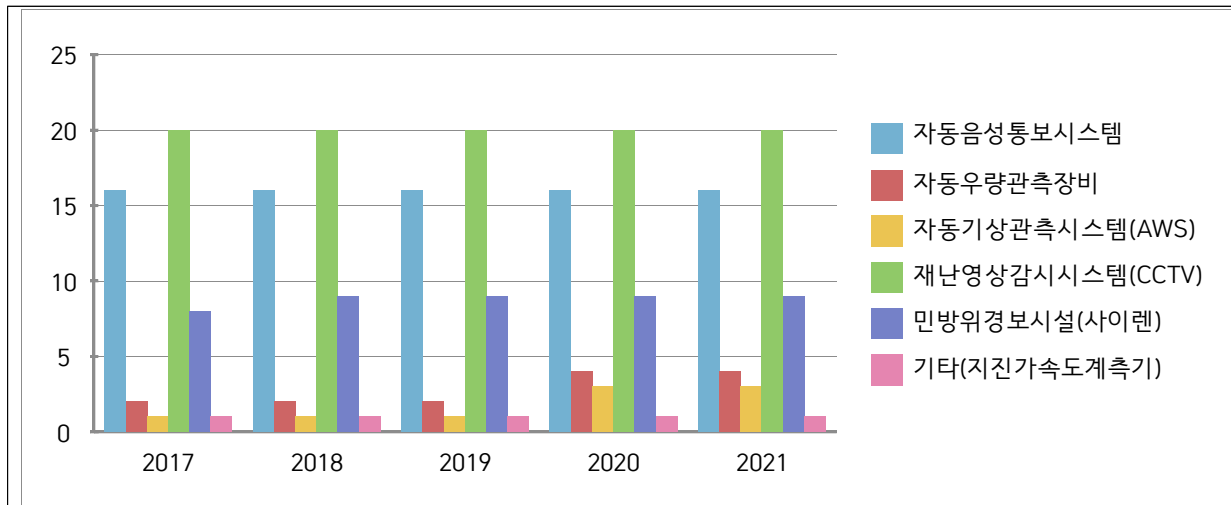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6	선학로68번길 외 15곳
자동우량관측장비	4	연수구청, 선학동, 송도2동, 송도3동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선학동, 송도2동, 송도3동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예경보시설 18대(회전형 8대, 고정형 10대), 수문 2대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9	연수구청 외 8개소
기타	1	지진가속도계측기(청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6	16	16	16	16
자동우량관측장비	2	2	2	4	4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	1	1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20	20	20	20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8	9	9	9	9
기타(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장비시설 종류와 관리 개소는 전년도와 동일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재난안전과 4차산업혁명과정	2021.01.19. ~01.2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1기 재난안전 신규실무자 과정	2021.01.25. ~01.2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비대면
재난영향평가과정	2021.03.08. ~03.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지진재난대비과정	2021.03.15. ~03.1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3기 재난구호일반과정	2021.03.25. ~04.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재난안전 1기	2021.03.25.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2	비대면
제4기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2021.04.16. ~05.1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급경사지관리과정	2021.04.26. ~04.2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4기 재난구호일반과정	2021.05.07. ~05.0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비대면
제2기 시군구 부단체장 및 안전 책임관 재난안전과정	2021.05.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제5기 사회재난복구제도의 이해	2021.05.20. ~06.0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재난안전2기	2021.06.04.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비대면
안전점검실무과정	2021.06.07. ~06.0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7기 재난구호 일반과정	2021.08.10. ~08.1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2021.08.17. ~08.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정보통신	2021.09.27. ~09.2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안전책임관 재난안전 전문교육	2021.09.2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9기 재난구호일반과정	2021.09.30. ~10.0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6	사이버
제9기 급경사지관리전문과정	2021.10.01. ~10.0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9기 급경사지관리전문과정	2021.10.04. ~10.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9기 유도선안전관리전문과정	2021.10.07. ~10.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10기 재난구호일반과정	2021.10.16. ~11.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자연재난대응과정	2021.11.8.~ 1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	2021.11.10. ~11.1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11기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21.11.19. ~11.2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11기 재난구호일반과정	2021.11.19. ~11.2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11기 급경사지 관리전문과정	2021.11.26. ~12.1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풍수해	2021.11.29. ~11.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비대면
제11기 지진해일대비 실무과정	2021.11.30. ~12.0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제11기 생활안전과정	2021.11.30. ~12.0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기간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방역소독교육	9월 ~ 11월	PC 영상회의	19	소독업무 법정교육	한국방역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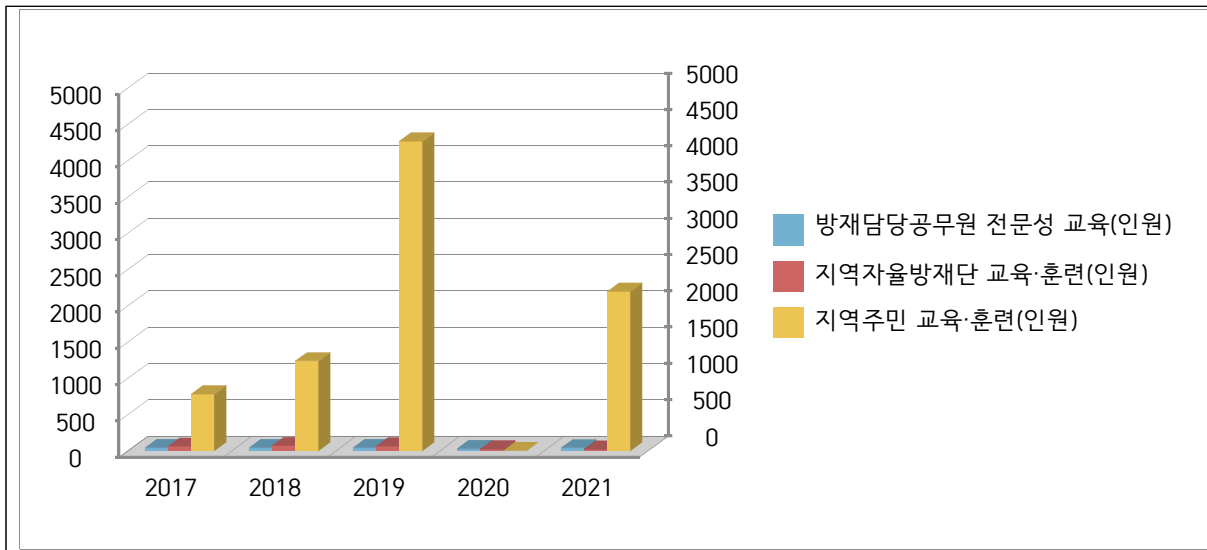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코로나19로 교육 미실시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어린이 안전 교육 뮤지컬	11.1.~ 11.30	연 수 구 유 튜 브 채널	2,195 (조희수 기준)	어린이 생활안전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처법	안전관리과	비대면 교육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42	40	42	27	38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61	69	62	22	19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782	1,237	4,267	0	2195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대면 교육으로 바꾸어 연수구 유튜브 채널로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을 방송하여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63	151	145	1	5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코로나19로 안전점검의 날 활동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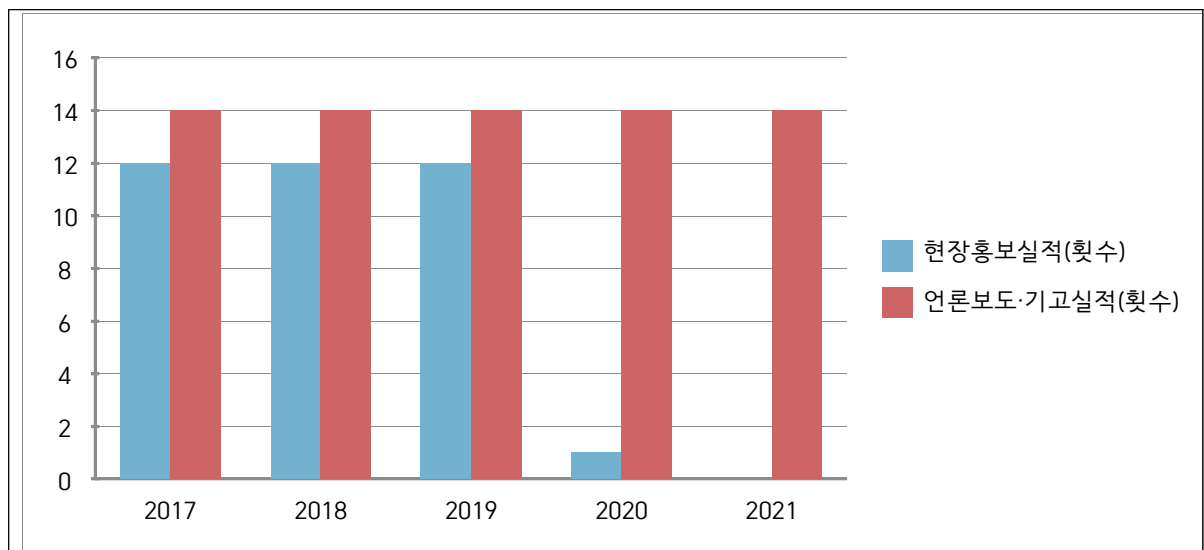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연수구, 추석 연휴 대비 현장 안전 점검 실시한다	도로, 상가 밀집지역의 경관시설물, 도시개발구역의 기반시설공사 현장 등 일제 점검	2021.9.15.	경인매일, 시민일보 등	
2	연수구 사용승인 20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실시	2021.9.3.	경인매일, 시민일보 등	
3	연수구, 다중이용시설 특별 방역점검 실시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2021.3.30.	스트레이트뉴스, 경인매일 등	
4	연수구,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홍보	풍수해보험 내용 및 가입대상 홍보	2021.9.18.	경일매일	
5	연수구 재난위험 시설물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재난위험 시설물 5개 분야 33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2021.11.5.	브릿지경제, 아시아에이 등	
6	연수구, 재난 대응 역량강화 마을 선포식 개최	마을 단위 자발적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	2021.6.21.	디스커버리뉴스, 천지일보, 경인매일 등	
7	연수구, 막바지 폭염 피해 예방...현장 예찰활동 강화	취약계층 폭염예방물품 전달,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등	2021.8.9.	베타뉴스, 경인매일, 브릿지경제 등	
8	연수구, 코로나19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확대 운영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2021.5.6.	이뉴스투데이, 경인매일 등	
9	인천 연수구,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마스크 생산시설 가동	전국 최초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역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마스크 생산 시작	2021.2.3.	국민일보, 중앙일보, 인천뉴스 등	
10	인천 연수구, 외국인 밀집지역 야간 선별진료소·백신접종센터 등 운영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외국인근로자 퇴근시간에 맞춰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백신접종센터 운영	2021.9.27.	인천뉴스, 인천투데이, 천지일보 등	
11	연수구, 코로나 백신 접종자 대상 심리상담 실시	선학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정신건강 상담과 검진 진행	2021.4.7.	인천투데이, 이뉴스투데이, 경인방송	
12	연수구, 방역 강화와 영업주 지원책 병행 추진	위생용품 및 소독약품 지원, 주방문화 개선자금 등 경제적 지원책 시행	2021.9.23.	경인매일, 시민일보	
13	연수구, 감염병 예방 대응위한 다부처 합동관리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연수경찰서, 연수보건소 등 합동관리 진행	2021.8.31.	시민일보, 브릿지경제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4	연수구,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어 전문성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온라인 비대면 진행	2021.11.4.	경인매일, 시민일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	0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4	14	14	14	1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미실시로 현장홍보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재난 대비 안전점검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활동 실적 위주로 언론에 홍보함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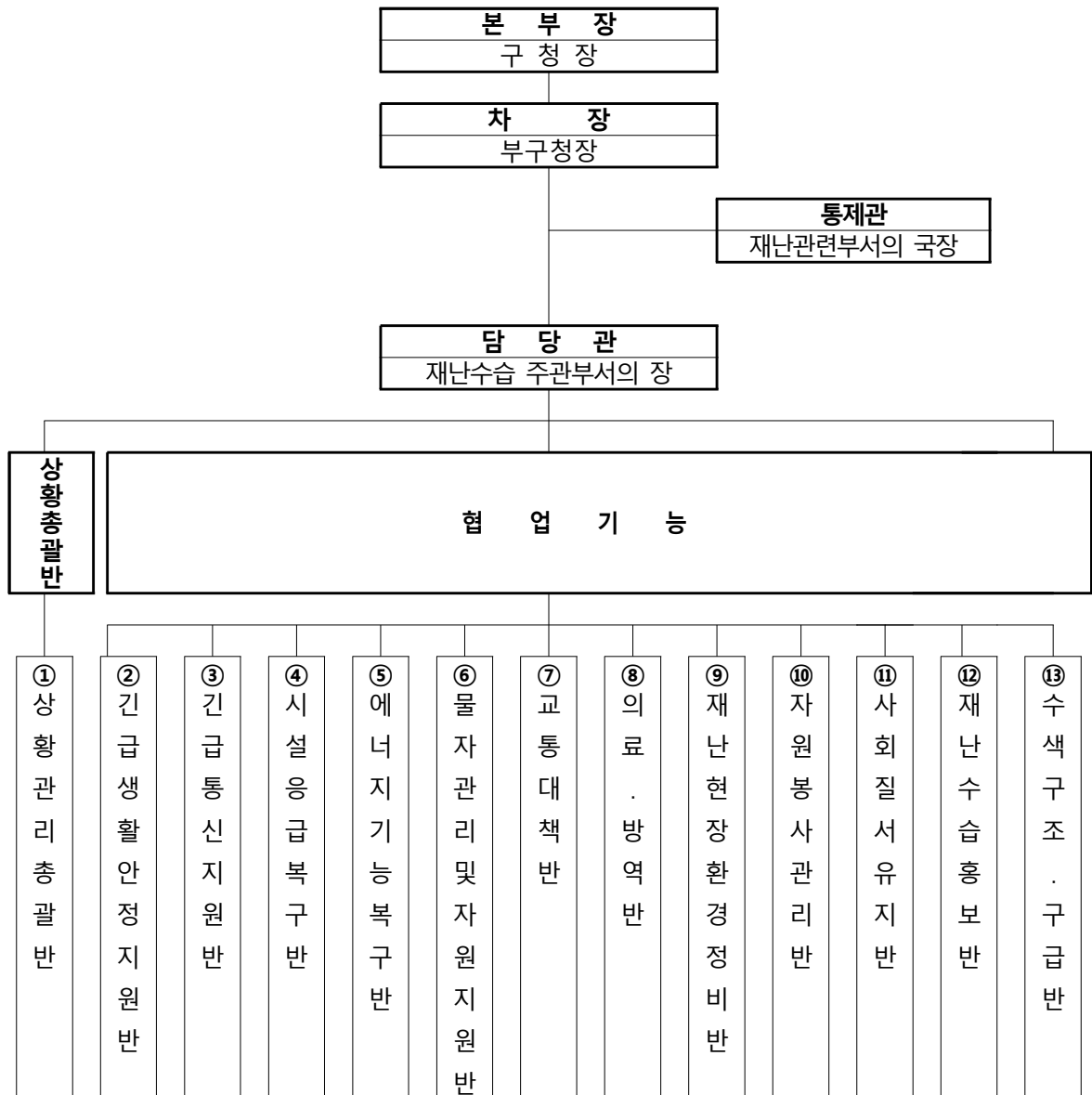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위원장 : 구청장 •위 원 : 15인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위원장 : 부구청장 •위 원 : 15인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본부장 : 구청장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안전관리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안전관리과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안전관리과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관리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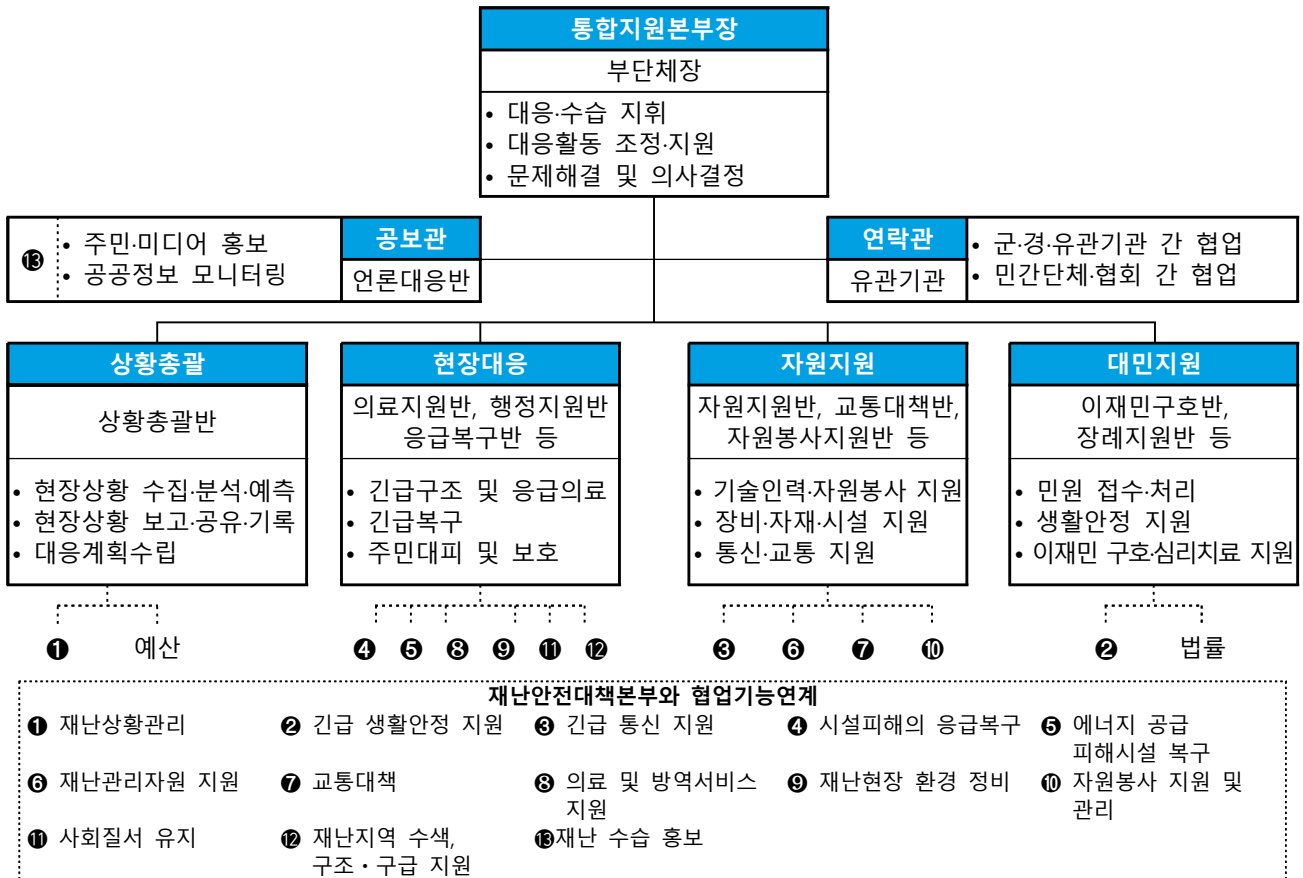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안전관리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건축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경제지원과, 건설과 전기팀)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홍보미디어실)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안전관리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연수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 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공단소방서, 송도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 총괄관리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공단소방서	· 재해발생시 인력 및 장비 지원체계 확립	032-723-5576
송도소방서	· 소방력 지원 출동체계 점검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	032-810-6634
연수경찰서	· 통제선 설치 및 구조인력·장비 등 현장출입통제 · 인명구조 경찰력 투입	032-453-0231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 전개 ·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 인명구조활동(현장진료소)	032-810-1332
남동부수도사업소	· 재해지역에 대한 급수지원 · 파손된 급수시설에 대한 복구	032-720-3516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	· 침수지역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 · 감전사고 취약 가로등·신호등 전기설비 점검	032-290-7062
KT 연수지사	· 재해발생지역의 구조구난을 위한 긴급통신 지원 · 재해지역 가입자 통신시설 정비	032-813-4499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 가스사고 발생시 2차 재해예방 강구 · 사고현장 응급조치	032-810-4552
한국전력 남인천지사	·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 · 전력설비 피해예방 및 피해지역의 안전홍보	032-830-5277
제6617부대 3대대	· 재해발생지역 장비 및 복구인력 지원	032-510-9744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0.12.21. 일부개정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2.09. 일부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12.31. 일부개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21.11.05. 일부개정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12.31. 일부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19. 12. 31. 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1. 12. 20. 일부개정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설 범위가 도로에서 지붕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법령 체계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2020.06.01.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사항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안전문화 운동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20. 11. 09. 일부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 마련	2019.04.05.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 지원	2018.05. 14. 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2018.05. 14. 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 12. 30. 제정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0.03.02. 제정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 12. 31. 일부개정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보건의료분야	에너지분야	공동구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송도1,3· 송도5,7· 송도6,8· 연수구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능허대 수문	능허대로 104번길 69	내외부 수문3식	2021. 1. ~ 12.	7	만조에 따른 옥련동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자동기상 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원인재로 115 외 3개 구역	연수구청 외 3개소	2021. 1. ~ 12.	14.09	자동기상 관측시스템 유지보수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021. 1. ~ 12.	8.92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2021년 사방사업	청학동 456번지 일원	돌수로 등 117㎡	2021.03.29. ~ 05.27.	96	산사태예방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 정비공사	연수구 관내	빗물받이 교체 연결관 교체 측구보수 등	2021.2~12.	100	도로부속시 설물 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연수구 관내	하수도 준설 255hr	2021.2.~12.	100	하수도 준설공사
옥련2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옥련동 640-1번지 일원	흙관부설35M비굴 착내면보수 49개소	2021.11.~12.	110	노후하수관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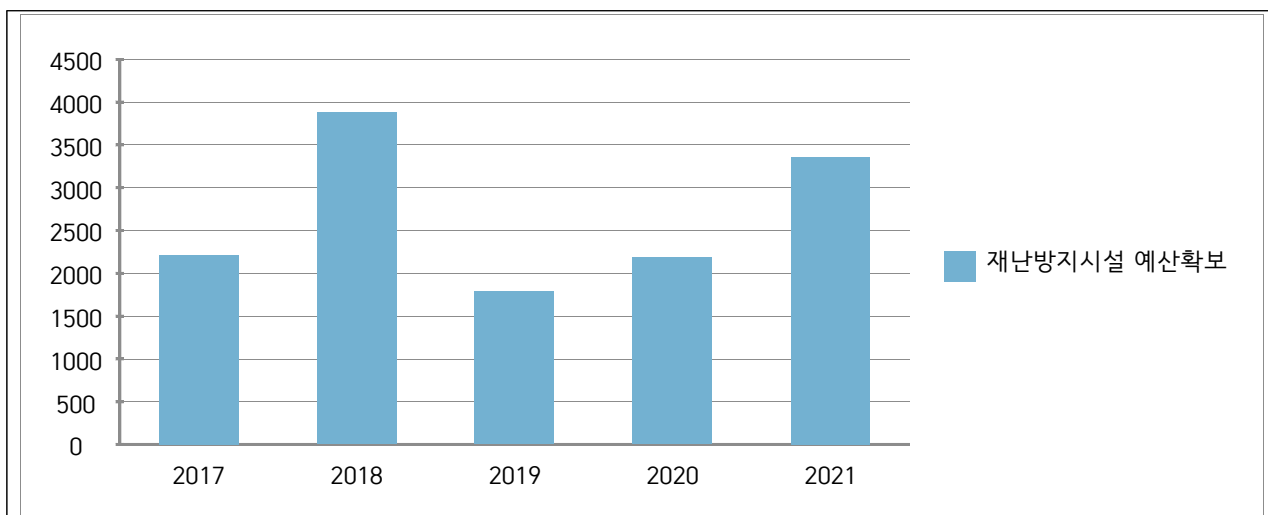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옥련1동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옥련동 525-1번지 일원	홍관부설 53m 비굴착전체보수 83m 비굴착부분보수 60개소	2021.11.~12.	200	노후하수관로 정비
원인재역 주변 오수관로 정비 공사	원인재역	오수관로 설치 184m,	2021.4.~11.	1,500	노후하수관로 정비
옥련동 512-14(우림빌 라) 일원 외 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옥련동 512-14번지 일원	홍관부설45m 비굴착내면보수 81개소	2021.2~4.	150	노후하수관로 정비
옥련동 시립박물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옥련동 시립박물관 일원	비굴착내면보수 L=602m, L=75m 등	2021.4.~6.	400	노후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준설공사	주요 간선도로 등	빗물받이 준설 242hr, 하수암거 준설 350m	2021.4.~6.	170	하수도 준설공사
공동구 수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연수공동구	수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교체	2021.7.~10.	156	공동구 노후시설물 정비
지하차도 수중펌프 구매설치	용담 지하차도	수중펌프 교체	2021.5.~6.	16	노후펌프 교체
공동구 관리사무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연수공동구	관리사무소 구조물 보수보강	2021.11.~12.	43	공동구 노후시설물 정비
2021년도 동막보도육교 데크정비공사	동막보도육교	목재데크 해체 및 설치	2021.05.~06.	21	시설물 정비
2021년도 선학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	선학지하차도	배수구 교체	2021.11.~12.	21	시설물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2021년도 청학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청학지하차도	지하차도 보수 및 세척	2021.03.~05.	70	시설물 정비
2021년도 용담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용담지하차도	지하차도 보수 및 세척	2021.04.~06.	19	시설물 정비
2021년도 옥련터널 보수보강공사	옥련터널	지하차도 보수 및 세척	2021.03.~05.	100	시설물 정비
2021년도 선학지하차도 및 옥련터널 내진성능평가 용역	선학지하차도 및 옥련터널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2021.03.~06.	56	시설물 관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212	3,876	1,788	2,182	3,358



☞ 하수관, 공동구 등 노후시설물 정비 등으로 전년대비 재난방지 시설 예산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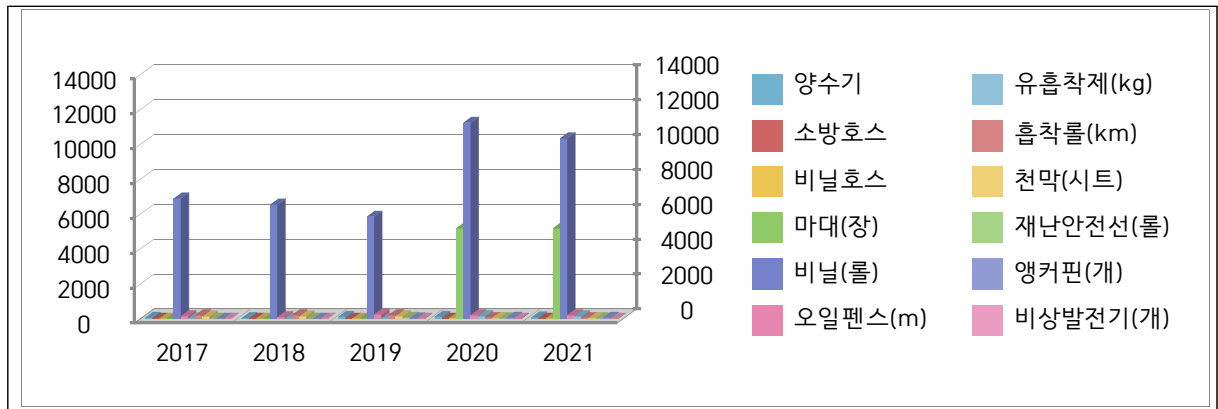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비상발전기	엔진펌프	수중펌프	비닐(롤)	비닐호스	소방호스	천막 (시트)	앵커핀
2대	12대	68대	23개	28개	13개	37개	59개
재난 안전선	순간흡수성 마대	PP마대	릴선	침수방지 매트	오일펜스 (m)	유흡착제 (kg)	흡착물 (kg)
23개	368개	5,187개	2개	6개	200	154	5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양수기	58	49	111	111	80
소방호스	15	15	15	15	13
비닐호스	10	10	13	33	28
마대(장)	25	25	25	5,187	5,187
비닐(롤)	6,900	6,547	5,847	11,250	10,350
오일펜스(m)	150	100	250	200	200
유흡착제(kg)	29.5	3	13	154	154
흡착물(km)	200	200	200	50	50
천막(시트)	130	130	154	37	37
재난안전선(롤)	4	4	55	21	21
앵커핀(개)	10	7	17	59	59
비상발전기(개)	0	0	1	2	2



☞ 양수기 고장 및 비닐호수, 비닐(롤) 등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수량 증감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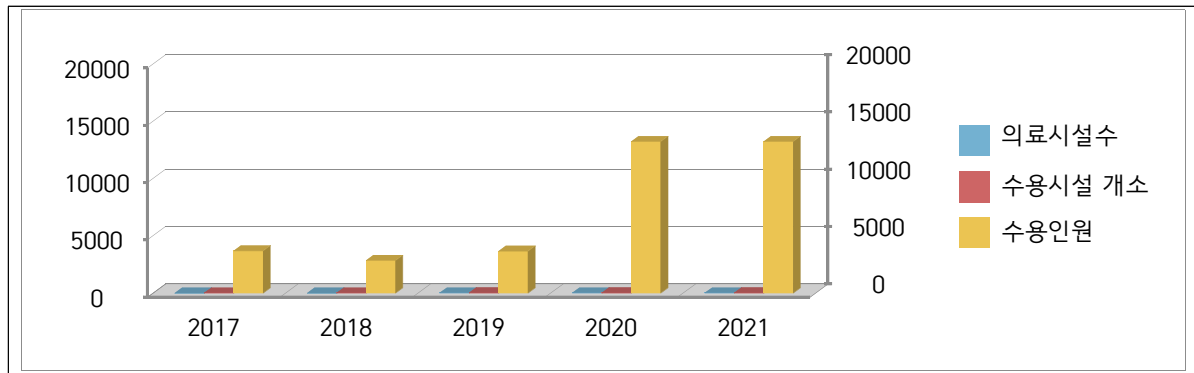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7	102	460	10	1,593	1
병 원	15	98	428	8	1,593	1
보건소	2	4	32	2	0	0
기 타	0	0	0	0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총계	37	13,218	28	11,751	1	30	7	932	1	505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시설수		11	11	12	12	15
수용시설	개소	15	15	20	37	37
	수용인원	3,673	2,857	3,662	13,218	13,218



☞ 관내 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짐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구급차	구난트럭
총계	4	2	2

[복구장비]

구분	계	모래살포기	굴착기	덤프	펌프
총계	177	48	2	3	124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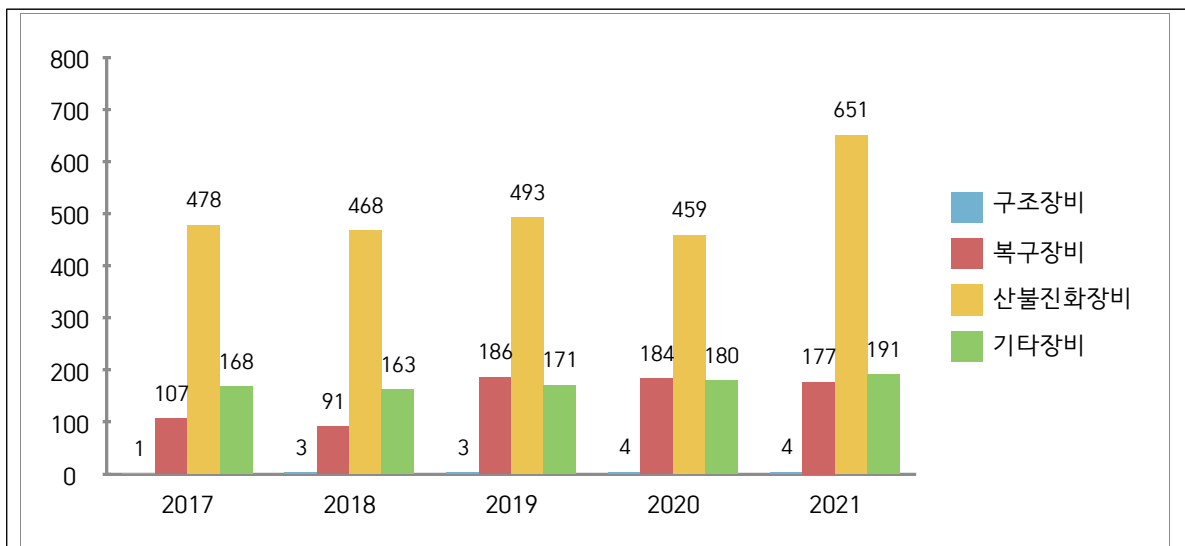
구분	계	등짐펌프	탱크트럭	전기톱	무전기	진화 도구	진화안전 장비
총계	650	223	1	12	13	346	55

[기타장비]

구분	계	에어 텐트	화물 트럭	방서 선측 정기	노면 청소 차	살수 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장착식 제설기	기타
총계	191	2	41	2	13	5	11	9	108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조장비	1	3	3	4	4
복구장비	107	91	186	184	177
산불진화장비	478	468	493	459	651
기타장비	168	163	171	180	191



☞ 복구 장비인 모래살포기의 경우 노후화 및 고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산불진화장비 중 등짐펌프 및 진화도구는 산불대응을 위해 대폭 보강하여 전년대비 보유 장비 증가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자동차정비	운전	임상심리사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공사	전파전자통신	용접
인원	2	6	2	1	1	5	2	1
구분	전자기기	정보통신	의사	약사	위험물	방사선관리	방송통신	계
인원	1	1	18	1	1	1	1	44명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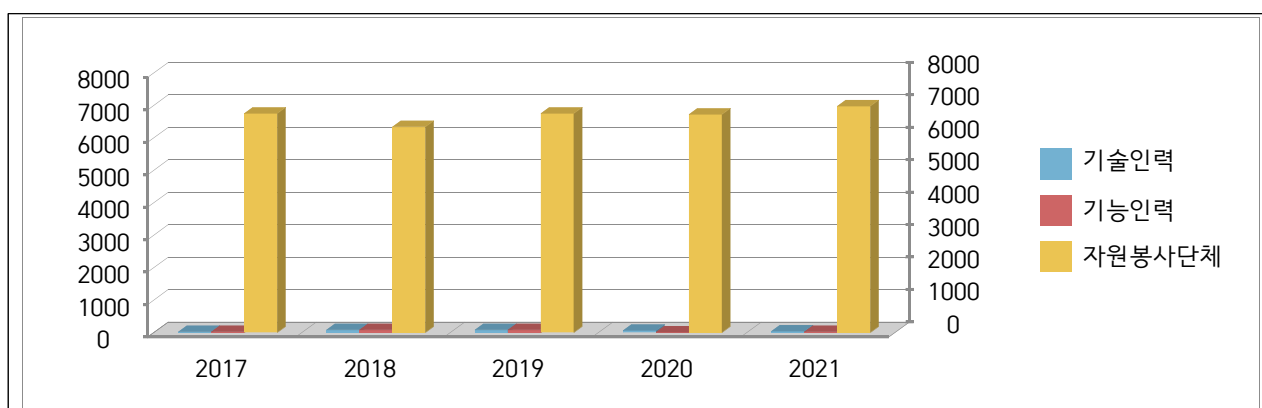
구분	계	지게차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화학취급기능사
인원	18	8	3	2	4	1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대한 건설 기계 협회	한국 열관리 시공 협회	한국건설 폐기물수집 운반협회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기타
인원	6,974	266	6,000	300	15	100	293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인력	18	78	78	56	44
기능인력	16	78	78	6	18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6,746	6,333	6,749	6,718	6,974



☞ 마을단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난 대응에 강한 안전 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기존 37명에서 293명으로 인원을 확대 구성하여 전년대비 단체 인원 증가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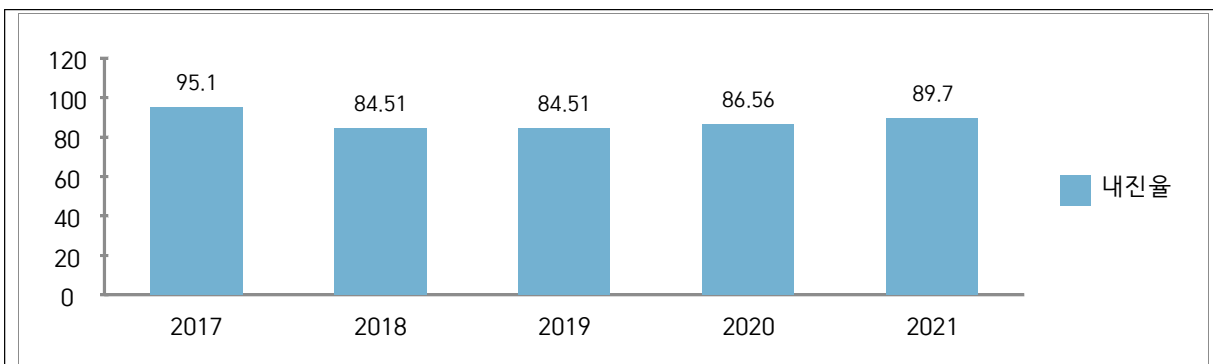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여름철 사전대비	2021. 4.	인천광역시	보통	
겨울철 사전대비	2021. 11.	인천광역시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물	68	61	3	95	89.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진율	95.1	84.51	84.51	86.56	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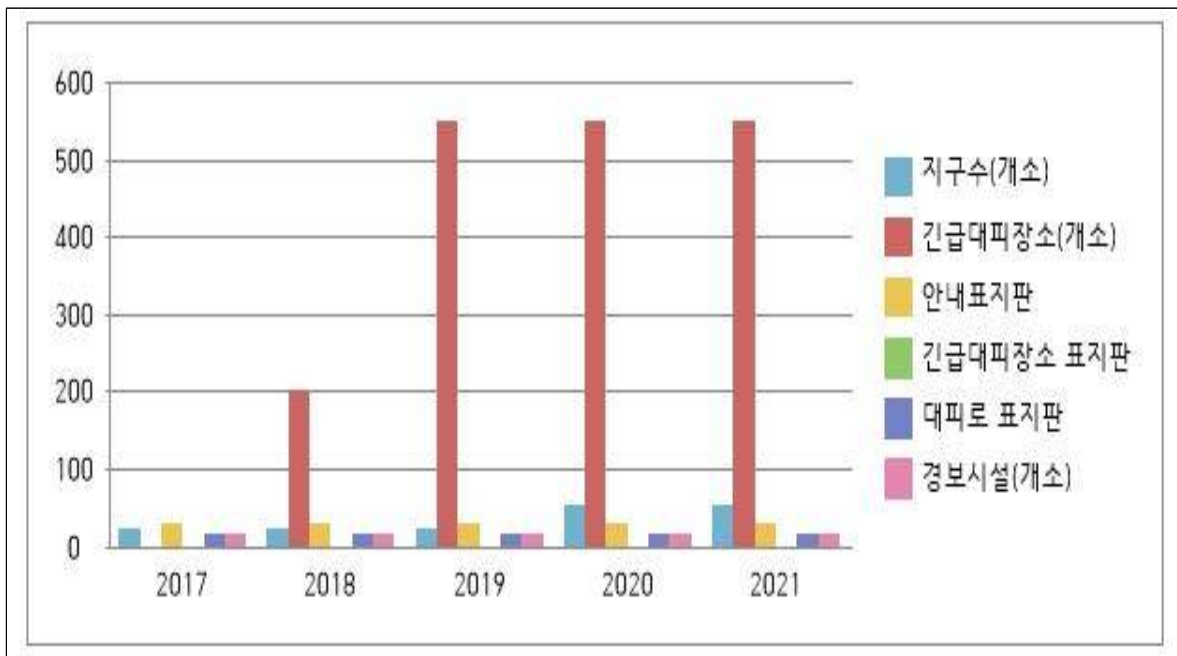
☞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정비(내진성능평가 3개소 완료)에 따른 내진율 소폭 상승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지진대피소	52	580	550	30	0	16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11,055	16,560	8,750	0	3,276
지구수(개소)		24	24	24	52	52
긴급대피장소(개소)		0	200	550	550	550
표지판	안내표지판	30	30	30	30	30
	대피로 표지판	16	16	16	16	16
경보시설(개소)		16	16	16	16	16



- ☞ - 지진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 7개소에 대한 정비작업 진행으로 1,122천원 지출
- 경보시설 관리용 CCTV 고장에 따른 수리를 위하여 2,154천원 지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42,762백만원	42,762백만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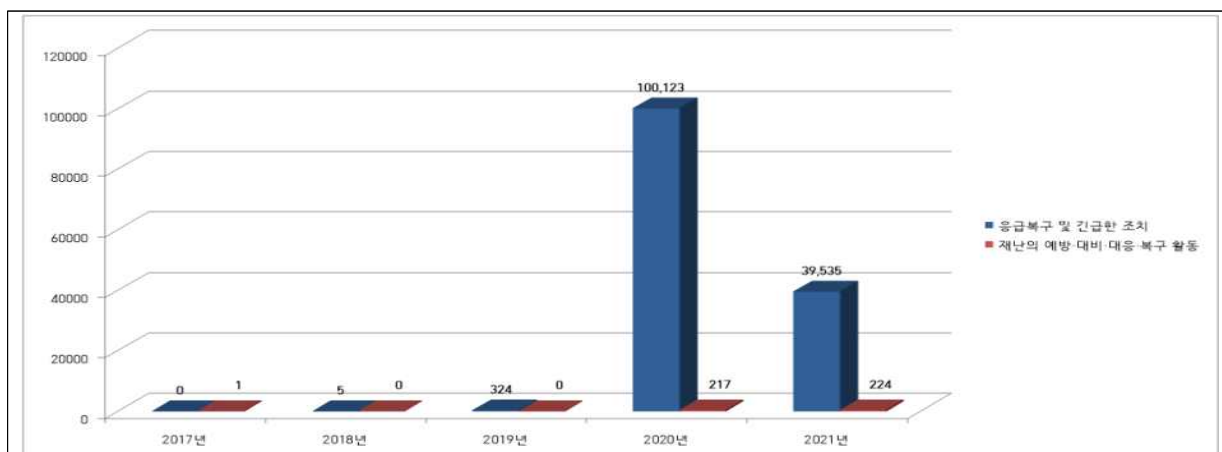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46,698백만원	146,698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확보액 (당해연도)			905	1,001	1,088	95,993	42,762
사 용 액	합 계		1	5	324	100,340	39,759
	공 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5	324	100,123	39,535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	-	-	217	224
	민 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	-



☞ 2021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액 100% 확보,
코로나19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금 확보액 및 지출액 증가

◇ 민간분야에 기금을 활용한 사업별 내역(당해 연도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안전관리과	2021	풍수해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지진·지진해일	안전관리과	2021	지진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대형 화산폭발	안전관리과	2021	대형화산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가뭄	안전관리과	2021	가뭄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조수	경제지원과	2021	조수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산사태	공원녹지과	2021	산사태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한파	안전관리과	2021	한파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폭염	안전관리과	2021	폭염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산불	공원녹지과	2021	산불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보전과	2021	유해화학물질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보전과	2021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대규모 해양오염	환경보전과	2021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공동구 재난	건설과	2021	공동구재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지하철 대형사고	교통행정과	2021	지하철 대형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안전관리과	2021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대형사고	건축과	2021	대형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가축질병	경제지원과	2021	가축질병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행정과	2021	감염병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정보통신	안전관리과	2021	정보통신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전력	경제지원과	2021	전력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행정과	2021	보건의료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초미세먼지	환경보전과	2021	초미세먼지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가스수급	경제지원과	2021	가스수급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2021	문화재시설 사고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통합본	안전관리과	2021	통합본 대응 현장조치 행동요령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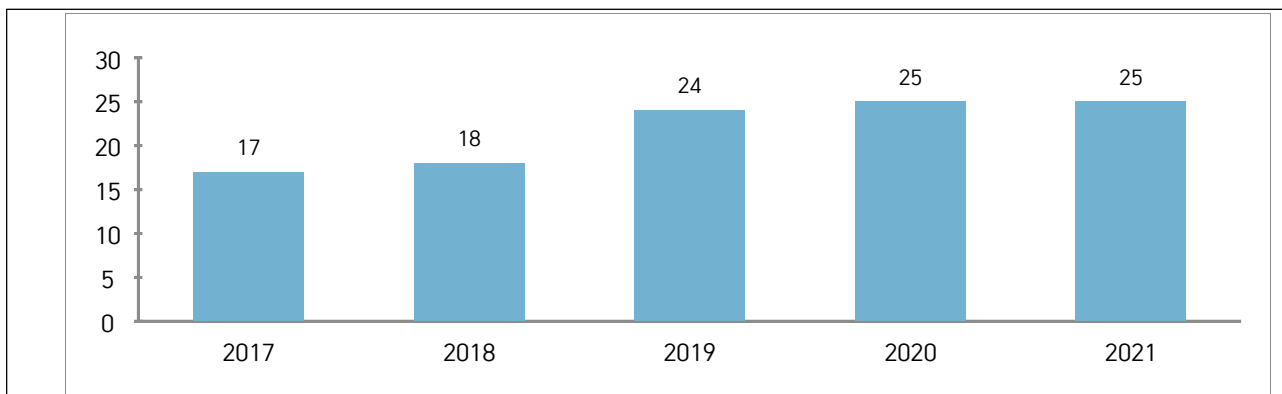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7.		
지진·지진해일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4.		
대형 화산폭발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4.		
가뭄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7.		
조수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산사태	2021.08.05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20.		
한파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0.22.		
폭염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7.		
산불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2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21.08.0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8.		
대규모 수질오염	2021.08.0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8.		
대규모 해양오염	2021.08.0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8.		
공동구 재난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22.		
지하철 대형사고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0.12.16.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2021.07.2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2.		
가축질병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감염병	2021.07.1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9.		
정보통신	2021.07.2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1.		
전력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보건의료	2021.08.0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초미세먼지	2021.08.09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8		
가스수급	2021.07.3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0.		
문화재 시설 사고	2021.07.2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08.		
행동매뉴얼 통합본	2021.08.10.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 현행화	
	2021.12.17.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3.17.	산불진화 대응훈련	산불 발생 시 체계적 대응 강화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3.25.	문화재시설 화재대응훈련	문화재 재난 발생시 대응 강화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5.10.	산사태 대응 훈련	산사태 발생 시 대응 강화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5.26.	다중이용시설 화재대응 도상훈련	유관기관 협업강화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6.18.	유해화학물질(염산 유출)로 인한 재난대응 도상훈련	유관기관, 13개 협업부서 협 업강화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6.30.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	수질오염 발생 시 대응 강화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뉴얼 수	17	18	24	25	25



☞ 2021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종류는 총 25종으로 전년도와 동일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 21년 평가 미실시

구 분	등 급(그룹)
진단결과	미 실시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 급	7	1	1	C	미 실시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표 산출 불가(집합교육 등)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2021년 지역안전도 진단 미 실시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안전지수 등급]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연수구	1	2	1	3	1	1

* (안전) 1등급 <-----> 5등급 (위험)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연수구 안전관리과(담당자 : 김은수, 전화 : ((032)749-885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인용조문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약칭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103, 황혜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103, FAX 749-7079
- E - mail : rath0610@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

7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재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의원”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로, “동조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관하여”를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하 의장” 을 “이하 “의장” ” 으로, “지체없이 구청장” 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이상” 을 “1 이상” 으로, “행정사무중” 을 “사무중” 으로, “조사” 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로 한다.

1. 구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 를 “법 제13조” 로,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의회” 를 각각 “의회” 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조에 따른” 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5조에 따른”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3조 ----- ----- ----- -----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u>의회의원</u> 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를 말	제2조(정의) ----- ----- 1. -----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

한다. 가. (생략)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 다. (생략)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자치법」 제70조-- ----- ----- 다.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3. (현행과 같음)
---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그 밖의</u> ----- ----- -----.
--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기능) ① (생략) 1. ~ 2. (생략)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② (생략)	제7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자치법」 제148조 ----- -----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 ----- 필요-----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u>관하여 필요</u> 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u>필요</u> ----- -----.
---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 항에 따른 행정동의(하부조직으 로 두는 동의) 통장 6. ~ 7. (생략) ⑤ ~ ⑥ (생략)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6. ~ 7. (생략) ⑤ ~ ⑥ (생략)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 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인천광 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u>관하여 필요</u> 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 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 법」 제130조에 따라 인천광역 시 연수구 ----- ----- <u>필요</u> -----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 ----- ----- -----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연수구</u> <u>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u>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u>법제</u> <u>6조의2제3항</u>의 사업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u>인천광역시 연수구</u> <u>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u>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u>법 제</u> <u>6조의2제3항</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계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공공계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제28조(사용료) ----- 「지방자치법」 제153조----- ----- ----- ----- -----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생략) ② (생략) 1.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2. (생략) ③ (생략)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163조-----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같은 법 ---- -----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 -----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
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
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연수구 소속 공
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3조(월정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
당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
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
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
호에 따른다.

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여
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급한다.

----- 필요-----
-----.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

② ----- 인천광역시 연
수구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
----- 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여비지급 기준) ① -----
-----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② ----- 「공무원 여
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하 “의장” ----- -----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

⑥ (생략)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
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
조 및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
방공기업

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

장”이라 한다)-----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
----- 1 이상-----

사무 중 ----- 행
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
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1. 구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

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
한다.

5.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제11조(증인의 보호) ① 구의회에
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
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
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
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
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생략)

-----.
--,
-----.

5.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 법 제49조제3항
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

--,

-----,

-----.

② 의회-----,

-----.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② 본회의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원의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
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
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생 략)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
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연수
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
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
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같음)

② -----

-- 해당 -----

-----.

③ ----- 해당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징계) -----
----- 제14조에 따른 -----

-----, 제15조에 따
른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 회의규칙」-----
-----.

제19조(준용규정)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
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연
수구의회 회의규칙」-----.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 ----- ----- ----- ----- -----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이하 의원”을 “이하 “의원” ”으로 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9조----- ----- ----- ----- -----, ----- ----- ----- -----.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u>	<u>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 심사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	제1조(목적) ----- 「지방자

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
 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
 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
 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
 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
 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
 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
 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인천광
 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이하 “의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

 ----- 「인천
 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

제17조(준용규정) -----
 --, -----
 ----- 「인
 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 회의규칙」-----.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동춘동 913-3	아암대로 809	2022.03.08.	건물멸실/ 건축물대장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토지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 등)을 폐지일로 하여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 폐지고시를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건물번호 부여 신청 후,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도로명주소

도로명		관련 지번	신규 도로명주소	비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2011.01.31	컨벤시아대로 시작지점에서 약 1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송도동 2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18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3.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